
**무배당 알리안츠
글로벌비즈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2007년 월 일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선 임 계 리 사 은 원 환

사 업 방 법 서 별 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연금보험

2. 보험의 구성

생존연금 지급형태	
종신	개인계약(정액형)
연금	부부계약(정액형)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3. 보험기간

구 분	보험 기간	
제1보험기간	계약일부터 Y세(45세 ~ 최고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종신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5년 · 10년 · 15년 · 20년)까지
	상속연금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4.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 보험료 납입주기

- 가. 기본보험료 : 월납
- 나.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6. 가입나이 및 연금 개시 나이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별로 아래 표와 같음
 - 연금개시나이 : 45세 ~ 70세
- 단,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연금개시나이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45세	33	34	34	29	24
46세	34	35	35	30	25
47세	35	36	36	31	26
48세	36	37	37	32	27
49세	37	38	38	33	28
50세	37	39	39	34	29
51세	38	40	40	35	30
52세	39	41	41	36	31
53세	40	41	41	37	32
54세	40	42	42	38	33
55세	41	43	43	39	34
56세	42	44	44	40	35
57세	43	45	45	41	36
58세	43	46	46	42	37
59세	44	46	47	43	38
60세	44	47	48	44	39
61세	45	48	48	45	40
62세	45	48	49	46	41
63세	46	49	50	47	42
64세	46	50	51	48	43
65세	46	50	51	49	44
66세	46	51	52	50	45
67세	46	51	53	51	46
68세	46	51	53	52	47
69세	46	52	54	53	48
70세	46	52	54	54	49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납입보험료의 한도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추가로 수시 납입하는 보험료로써, 1회당 최소 1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납입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

기본 사망보험금	기본보험료 한도
100만원	2만원 ~ 19만원
200만원	19만원 초과 ~ 39만원
300만원	39만원 초과 ~ 59만원

(2) 추가납입보험료

(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는 매년 정한다.

(나) '(가)'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가)'의 한도를 적용한다.

9.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1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4회(월1회에 한함)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
- 라.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10. 공시이율 계산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 월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I : 직전 6개월간 투자 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 비용
- A_6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라. ‘나’ 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 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1. 기타

가.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지급개시시에 연금 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나.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라. 종업원 복리후생 할인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의 일부로서 연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할 수 있다.

(1) 할인대상

연금지원 제도를 적용받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2) 할인율

연금지원 제도를 적용받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예정사업비(예정신계약비 제외)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영수한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20명 ~ 199명	200명 ~ 399명	400명 ~ 599명	600명 ~ 1,199명	1,200명 이상
할인율	1.5%	2.5%	3.5%	4.5%	5.0%

(3) 무배당 글로벌비즈보헤판증액특약이 부가된 경우, 증액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4) 상기 할인제도는 기타 할인제도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이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사.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 ×12 ×MIN [납입기간, 10]

아.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 비율은 연금개시 시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